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성북!

성북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3월 당직근무 명령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당직근무규칙」 제7조에 따라 2015년 3월 당직근무 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각 부서장은 당직근무자에게 반드시 확인시켜 당직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2. 당직에 임하는 직원은 잔무 등을 이유로 사무실에 체류하는 일이 없이, 종합상황실 내에서 당직근무에 전념(외부출입자 통제, 각종 사고·민원접수 등) 하여 주시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사소한 것에서도 감동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민원응대 바랍니다.

3. 아울러 당직근무일에 교육 및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수명자 소속부서에서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5일전까지 당직근무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직근무 변경 방법

1) 교육, 출장, 휴가, 경조사 등 개인용무 발생 시

⇒ 당사자가 대체 근무자와 합의 후 공문을 통해 당직근무 변경 신청

2) 구(본청) 외 전출 및 입원 등 당직근무자가 대체근무자를 확보할 수 없을 때

⇒ 해당부서 서무담당이 대체자를 선정하여 행정지원과로 통보

3) 기타

- 긴급한 상황 발생시 행정지원과에서 '당직근무 변경명령' 시행

나. 근무시 유의사항

1) 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수신 확인

- 상황전파메신저 팝업창에서 수신확인 버튼 클릭

